

#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2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노인복지관의 명칭, 시설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복지관의 명칭 변경(안 제2조)
- 나. 시설이용료 징수의 세부 내용 개정(안 제9조의2)
- 다. 시설이용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감면 대상을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라 명시함(안 제10조)

## 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: 생략

## 5. 신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## 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4. 12. 26.~2025. 1. 15.(20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## 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## 9. 관련부서: 경기도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

##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별표와” 를 “별표 1과” 로 한다.

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8조의2에 따른 이용자는 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시설이용료의 면제)” 를 “(시설이용료의 감면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 (시설이용료의 감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
2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2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노인장애인복지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 유 정
	팀장 직위·성명	복지시설팀장 구 선 미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진 기 숙 (790-5215)

[별표 1]

하남시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(제2조 관련)

명칭	위치	비고
하남시노인복지관	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488 (춘궁동)	
미사노인복지관	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00 (풍산동)	

[별표 2]

시설 이용료(제9조의2 관련)

구 분	이 용 료	비 고
물 리 치 료 실	무 료	
체 력 단 련 실	무 료	
목 욕 실	무 료	
이 · 미 용 실	무 료	
도 서 실	무 료	
식 당	1,000원	1인 1식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 (명칭 및 위치) 하남시에 설	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	제2조 (명칭 및 위치) -----		-----
소재지는 <u>별표와 같다.</u>				<u>별표 1과 --.</u>
제9조의2 (시설이용료 징수) ① 삭	제	제9조의2 (시설이용료 징수)		
② <u>제8조의2 규정에 따른 시설이</u>	<u>용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시</u>	② <u>제8조의2에 따른 이용자는</u>		<u>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</u>
<u>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	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		<u>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
③ · ④ (생략)				
제10조 (시설이용료의 면제)		제10조 (시설이용료의 감면) 다음		
① 삭제	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
②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</u>	<u>당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</u>	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		
<u>제할 수 있다.</u>		바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하		
1.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u>		거나 면제할 수 있다.		
2. 「 <u>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</u> 」	<u>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</u>	1. 「 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 」에		<u>따른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</u>
<u>가 심한 장애인</u>		<u>급자</u>		
3. <u>국가유공자</u>		2. 「 <u>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</u> 」		<u>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</u>
		<u>가 심한 장애인</u>		
		3. 「 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</u>		<u>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6조에 따
		<u>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</u>		<u>가족으로 등록된 사람</u>